

서울고등법원

제 6 형 사 부

결 정

| | | |
|---------|--|------|
| 사 건 | 2006초기317 | 재정신청 |
| 신 청 인 | 김명호 | |
| 피 신 청 인 | 1. 이용훈 2. 이광범 | |
| 불기소 처분 |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06. 8. 10. 2006년형제79341호 결정 | |
| 결 정 일 | 2006. 9. 11. | |

주 문

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.

이 유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는, 본건 고소는 고소 내용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.

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검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,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.

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재판장 판사 서 명 수

 판사 김 동 아

 판사 김 춘 호

정 본 입 니 다.

2006. 9 . 12 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노 영 수



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**3일**이내에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(2층)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